#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제	정 : 2012. 6. 29. 🗌 개	정 : 2019.	6. 1	8.
□개	정 : 2014. 8. 27. 🗌 개	정 : 2020.	3. 1	3.
□개	정: 2016. 3. 9. 🗆 개	정 : 2020.	7.	1.
□개	정 : 2017. 2. 17. 🗆 개	정 : 2021.	9.	1.
□개	정 : 2017. 8. 31. 🗌 개	정 : 2022.	3.	1.
□ 개	정 : 2019. 3. 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 중 현장실습 수업방법에 관한 사항,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의거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이 정하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이란 대학과 현장실습 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지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다.

- ②"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의 영문표기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표준 현장실습 이외의 대학에서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형 태를 말한다.
- ④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학생의 실무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의 운영이 가능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 ③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전공 관련 학점 인정 및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 ⑥ "현장실습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란 실습기관 발굴 및 섭외하여 학생을 실습기관별로 추천하고, 실습내용 및 진행사항에 대해 순회지도(중간점검)를 실시하며, 현장실습 종료 후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는 교수를 말한다.

- ①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다.
- ⑧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말하다.
- 제3조(적용제외)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에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 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한 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
- ②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 제4조(현장실습학기제 학기 및 구분)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기단위로 일정기간 연속 실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계절 현장실습학기제 :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중 4주 이상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2. 학기 현장실습학기제 : 1학기, 2학기(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 중 15 주 이상 표준 현장실습학 기제 또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수행 국가에 따라 국내 현장실습학기제와 국외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 운영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 국내의 실습기관과 운영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 2. 국외 현장실습학기제 : 반드시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만 운영하여야 한다.

## 제2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제5조(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취지와 목적, 상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다.
- 1.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

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양성 기회로 활용한다.

- 2.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한다.
- 3. 대학은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 ②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 ③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 ④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 2.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운영(직무수행 및 지도)계획
  - 4.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 6.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현장실습학기제는 제4항에 따라 학생의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되어야 하며,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주어야 한다.

**제6조(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①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이하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의미한다.

-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한다.
-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제7조(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다.
- 1.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 2.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3.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4. 제5조, 제4항 제5항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 5-0-1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5. 제19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6. 제22조, 제25조 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7. 제25조 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8.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제8조(학생) ①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수행학기에 개설된 현장실습학기제 과목의 수강신청 등 수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 현장실습학기제의 취지 및 전공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신청 기준으로 운영한다.
  - 가. 계절 현장실습학기제 : 입학 후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나. 학기 현장실습학기제 : 2년제는 두 학기 이상, 3년제는 네 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 3. 계절 현장실습학기제 및 학기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학기를 등록 후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 4.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재직 중인 학생은 제외하다.
- 5. 학과(전공)는 학생이 제11조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내용을 확인한 후 현장실습학기 제 과정을 신청,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정규학위과정 외의 외국인 유학생(교환학생 포함) 등은 제외하다.
  - ②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
    - 3. 현장실습학기제 중 습득하게 된 실습 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 4. 국외 현장실습학기제 중 체류국 법규 및 실습기관의 기준을 준수하여 학생의 품위 손상 행위 금지 등
- ③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교육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2. 현장실습학기제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받을 권리
- 3. 현장실습학기제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사항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 4. 이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9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2.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3.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설비・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 4.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5.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지를 배치할 것
  - 6. 기타 이 규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 대학에서 정한 기준을 갖출 것
- ②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1.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권리
  - 2.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학생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
- 3. 학생 또는 대학으로 인하여 운영 기준 및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등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운영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리

제10조(운영 절차) ① 학과(전공) 및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한다. 다만, 교육부고시 제30조제4항의 경우 이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학과(전공)는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실시
- 2. 실습기관 운영계획서의 학과(전공) 제출 및 실습기관과 학과(전공) 간 협의를 통한 운영계획 확정
  - 3. 실습기관별 운영계획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정보의 학생 공지
  - 4.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접수 및 실습기관에 학생 추천
  - 5. 실습기관의 실습 참여 학생선발 및 결과 통보
  - 6.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및 사전교육 실시
  - 7.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및 대학의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조치
  - 8. 실습기관 및 학생 간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 9.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 10. 실습기관과 학생 대상 현장실습학기제 수행 점검 및 관리
  - 11.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 제출
  - 12. 학생의 수행결과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 제출
  - 13.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수강신청 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에 대한 학점 처리
  - 14. 기타 필요한 경우 대학과 실습기관이 합의하여 정한 절차
-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신청 및 선발 시 대학은 전공적합성과 현장실습학기제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습기관에 학생을 추천하고, 실습기관에서 해당현장실습학기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대학과 무관하게 직

접 학생을 모집하거나 신청, 접수 받아서는 안된다.

제11조(운영계획서의 구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는 경우 학과(전공)와 실습기관에서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1. 실습기관 정보
-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 및 기간
-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 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
- 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이 아닌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대학 자체의 운영계획서 서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운영계획서는 학과(전공)와 실습기관 간의 업무협의 시점에 실습기관에서 학과(전공)에 제출하고, 센터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관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을 사전 공지하여 운영한다.

제12조(적합성 검토)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과(전공)에서는 제11조에 따른 실습기관과의 운영계획 협의·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여부
-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과 관련된 전공(학과) 또는 계열 특정의 관련성 및 적합성 등

제13조(협약) ① 현장실습학기제를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대학, 학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별도 서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습기관 및 대학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및 확정된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유영하다.
- ③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실습 내용 변경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학기제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참여 학과(전공)에 통보하고 대학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의 무단결석, 실습지도 거부 및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현장실습학 기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대학 측에 알리고 대학과 실습기관과의 협의하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관리) ① 학과(전공) 및 실습기관에서는 공휴일, 제19조제4항 · 제5항에 따른 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학기제의 미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한다.

- ② 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석을 관리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별도 서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지도교수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실제 계획된 일정으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실습기관의 출석관리 사항을 점검한다.

제16조(현장실습학기제 결과물제출) ① 계절 현장실습학기제를 이수한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기간 이내에 현장실습 주간보고서,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등 결과물을 학과(전공)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② 학기 실습학기제를 이수한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기간 이내에 실습교과목 담당교수별로 부여받은 현장실습보고서 및 과제물을 해당 실습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현장실습학기제 취득학점) ① 계절 현장실습학기제는 최소 4주(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Pass / Fail로 평가하고, 학기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제로 현장실습학기제가 수행된 학기의 학점으로만 부여하여야 한다.

- ② 학기 현장실습학기제는 최소 15주 이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20학점으로 하다.
- ③ 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하여 대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해당 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 교과목 학점으로 한다.
- ④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8조(현장실습학기제 평가 등) ① 현장실습학기제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 ②실습기관에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현장실습학기 제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별도 서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평가표 및 출석부를 작성하여 학과(전공)에 제출하고, 학과(전공)에서는 실습기관의 제출사항에 대한 이상 여부에 대한 검토 후실습기관과의 해당 현장실습학기제를 종료한다.
- ④ 계절 현장실습학기제의 평가는 현장실습기관의 현장지도 담당자가 평가한 성적을 근거로 해당 학과에서 평가한다.
- ⑤ 학기 현장실습학기제의 각 실습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학기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반영한 현장실습보고서 및 과제물을 개별 부여하여야 한다.
- ⑥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정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학생의 성적은 Fail(F)로 표기한다.

- ① NCS 운영 교과목 등 학과 교육과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학과 성적평가를 해당 학과 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 ⑧ 대학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시점에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만족 도, 건의사항 및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청취하여 현장실습학기제의 선순환 운 영이 되도록 한다.
- 제19조(학생 보호) ① 학과(전공) 및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포함)로 한다.
- 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실습기관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하여 협의하여 실시한다.
- ⑥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4항 및 제5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 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 2.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실시
- ①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기관의 현장교육 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⑧ 제18조에 따른 평가 시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③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학과(전공) 및 센터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센터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실습기관에서 이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 요하는 경우
  -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 4.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제20조(자료 구비 등) ①학과(전공)는 학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원본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다.

- 1. 실습기관 발굴, 모집 등과 관련한 공문 및 공고문 등의 공적 문서
- 2. 실습기관 및 학생별 운영계획 및 협약, 출석 및 평가 관련 서식
- 3. 참여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 등 학점인정 관련 각종 서류
- 4. 제19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가입 및 대학의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 ② 학기별로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유지 및 관리하다.
  -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학년도, 학기, 국내 및 국외(국가명) 구분
  - 2.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소속 정보(학과, 전공), 학번, 이름, 학년
  - 3. 실습기관 정보 및 실습지원비 수령 현황
  - 4.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산재 및 상해보험 가입 사항
  - 5. 현장실습학기제 시작일, 종료일 및 실제 출석일수
  - 6. 수강신청 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및 학점 수 등
  - 7. 기타 대학에서 지원한 사항 등

# 제3장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제21조(운영 기간 및 시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여 편성하고 실제 출석일수 기준 최소 20일(1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한다.

1.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단, 실습

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2.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대학에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단,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 3. 제1항 제2호에 따라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 제2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운영시간 기준을 지켜 운영한다.
- 4.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단, 실습기관의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에 따라 야간에 운영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학과 실습기관은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를 협의한 후 학생이 야간에 운영될 수 있음을 미리 알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대학을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 ④ 제3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 3.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 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 ③ 연장·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제23조(근로계약) ① 실습기관은 제13조에 따른 협약 체결 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중 발생할수 있는 근로 문제 예방 등 학생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해당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시 학과(전공)와 협의 후 진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은 이 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과 범위에서만 근로계약체결이 가능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범위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다른 기준으로 체결할 수없으며, 이외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24조(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① 국외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 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되, 그 밖에 사항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조항에 따라 운영한다.

- 1.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의 운영계획서 및 출석ㆍ평가표로 운영할 수 있다.
- 2. 별지 제2호서식의 국외 실습기관과 협의한 문서 또는 서신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 3. 실습지원비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또는 제22조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국가에 최저임금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임금수준 및 물가 비교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세워 시행할 수 있으나, 국내 실습기관에서 국외 지사 등으로 파견하는 형태 등 실습지원비의 소득처리가 국내에서 이뤄지는 경우의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국내・국외 실습지원비 기준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
  - 4.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국가에서 정한 비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장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제25조(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외에 대학의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21조 범위에서 대학과 실습기관 간 협

#### 의하여 결정하다.

- ③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경우의 실습지원비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제22 조의 실습지원비 기준을 적용하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 1. 전공 교과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 2. 학과(전공)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한다.
- 3.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한다.
- 5. 일련의 과정 및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된다.
- 6. 실습기간 동안 학생은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Job Shadowing)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다.
- 7.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기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기준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장 국가재난 등에 대비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26조(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①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에 우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현장실습학기제 일시 중단의 경우 현장실습학기제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복교에 따른 중단 시 제17조에 따른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교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체실습 교과 등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휴학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재택실습) ①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 2. 재택실습 실시 시 대학에서는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 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3.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재택실습 1/4 초과 시 제28조에 의거 대체실습 교과목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대체실습 교과목 편성 및 운영)** ① 재난 상황에 따라 대체실습 교과목 편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대학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 또는 콘텐츠 활용 교육, 교내실습 등으로 바꿔 운영하고자할 경우 별도 대체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대학에서는 실습기관과협의하여 해당 현장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수강취소 등의 조치 후 운영하여야 한다.
- 2. 대체 교과목 편성 및 운영을 할 경우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으로 운영 및 학점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 제6장 현장실습학기제 지도 및 관리 등

제29조(현장실습학기제 순회지도) ① 지도교수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하는 학생지도를 위하여 현장실습기간 중 1회 이상 해당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지도를 하여야 한다. 단, 국외의 경우 인터넷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

- ② 지도교수는 신규 실습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전에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하여 이 하며 서면으로 점검을 한 경우에는 운영 기간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규로 참여하는 실습기관이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지도교수는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점검, 순회지도를 위한 출장을 가기 전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점검, 순회지도를 다녀온 이후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의

#### 5-0-1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④지도교수의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점검, 순회지도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의 출결사항
- 2. 실습 직무와 전공 연관성 정도
- 3. 실습 태도 및 이행 능력
- 4. 현장실습 보고서 기록상황 및 실습 진도
- 5. 학생의 교육·감독·평가를 담당하는 실습 기관 담당자의 지도상황
- 6. 현장실습 여건 및 애로사항 등

제30조(현장실습학기제 운영위원회) ①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실습계획, 실습기 관 선정, 신청학점 검토, 점수평가 검토 등의 제반사항을 성과 관리 할 수 있는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위원회는 현장실습과 관련된 제반사항 및 총장이 요구하는 사항 을 성과 관리한다.
- ③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위원회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평가 설문지, 현장실습 평가서, 현장실습 순회지도결과보고서 등을 통하여 현장실습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현장실습종합평가 결과를 각 학과 에 공개하여 현장실습과 관련된 업무가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위원회는 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회환경, 현장실습을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 한하여 현장실습 대체 프로그램으로 변경 할 수 있다.
- ⑤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위원회가 겸임한다.
- 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 (기타) ① 이외의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및 학사내규,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르며, 그 외 규정은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식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		다. I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E	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기관(법인)명		영문기관		
대표자명		사업자등록		
개업 연월일		한국표준산업		
종업원 수		매출의	1	
사업장소재지				
홈페이지				
	구분	상장여부	사업의 종류(업태)	사업의 종류(종목)
	대기업 [ ] 중견기업 [ ]	코스피 [ ] 코스닥 [ ]		
기관현황	중소기업 [ ]	비상장 [ ]		
,,	공공기관	1000		
	협회/기타 [ ]			
2121				3
기관		기준 :[ ]시간	/ ■ 1주 기준 : [	]시간
근로형태	<b>정규 근로일수</b> ■ 주 :	[ ]일 / • 근로요일	: [ <i>직접기입</i> ] *	월~금 등 요일 기입
	부서명	성명	5	직위
관리부서	연락처	휴대	폰	
	이메일			
전형방법	서류선발 / 면접선발	/ 학교추천선발 등 전형	I 및 서박방법 기인	
	접수마감일자	면접일자	최종선발일자	※참고일정
전형절차	00월00일00시[ ]	00월00일00시[]	00월00일00시[	NOTES
및 일정	일정별도협의[ ]	일정별도협의[ ]	일정별도협의[	]
		202164[ ]	202161L	1
운영계획	붙임 1.의 <b>표준 현장실</b>	일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	<u>서</u> 에 따라 실시함
기타사항	Co-op 운영과 관련히	하여 필요한 특이사항 기	입(필요시 기입)	
ノロバら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기준 및 절차

[운영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참고 [운영절차] (학교)Co-op 참여 의뢰(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 ▶ [현재단계](기관)Co-op 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회신(송부) ▶ (학교/기관)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 ▶ (학교)Co-op 정보공지 및 교과목 개설 ▶ (학교)학 생 신청접수 및 추천 ▶ (기관)학생선발 ▶ (학교)사전교육/수강신청 실시 ▶ (학교/기관/학생)3자 협약체결 ▶ (기관/학교)산재/상해보험 가입 ▶ (기관)운영계획에 따른 실시/출석관리 및 평가실시 ▶ (학생)보고서작성 ▶ (학교)성적 평정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붙임 서류	2. 사업자 등록증 ▶최초 참여 시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제출
	3. 기관소개 자료 ▶최초 참여 시 또는 홍보 목적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출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이에 귀 대학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날인/서명)

[별지 제1호 서식]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 ■ [붙임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

문영유형	운영	 경과정	■방학과정 [ ] ■학기과정 [ ] ■방학/학기 연계과정 [	]
정규실습 시간 오전 시 분~ 오후 시 분(▶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 실습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연장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 *상황별 실시 [] *주기적/상시적 실시 [] 산재보험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 *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Y[] / N[]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단 특이사항 등 기업  전장실습시간 *지급기준: [월/주 기준 중 선택] ▶ [기준] / [] 원 (*교육부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 지급예정일 *당월 [] 일 또는 *익월 []일 (*의율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기타 지원 사항 *식사 [] *교통[] *기숙사[] ◀현물지원 사항  현장교육 당당자 역락처 휴대폰 이메일  부서명 주소 직무명 교육 * 목표 * 실습 직무 기관 ** *********************************				-
실습요일 월 [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연장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 ] *상황별 실시 [ ] *주기적/상시적 실시 [ ] 산재보험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한(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 *문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Y[ ] / N [ ]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단 특이사항 등 기일    실습지원비	실립	늘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연장실습 여부 *연장실습 없음 [ ] *상황별 실시 [ ] *주기적/상시적 실시 [ ] 산재보형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형을 의무 가입한(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 기타사항 *근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Y[ ] /N [ ]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단 특이사항 등 기의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단 특이사항 등 기의 전상실습시간 *지급기준 : [월/주 기준 중 선택] * [ 기준] / [ ]원 (*교육부 교시 기준에 따라 작성) 지급예정일 *당월 [ ]일 또는 *익월 [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기타 지원 사항 *식사 [ ] *교통[ ] *기숙사[ ] 4 현물지원 사항 전상교육 당자 이메일 보다 작성 휴대폰 이메일 보다 작성 휴대폰 이메일 보다 작성 휴대폰 기내 기계	정규실	습 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	)
산재보험 가입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한(법적 의무가입 / 미가입시 운영 불가)  "문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Y[] / N[]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의  전자실습시간 "지급기준: [월/주 기준 중 선택] * [ 기준] / [ ]원 (*교육부 교시 기준에 따라 작성) 지급예정일 "당월 [ ]일 또는 "익월 [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기타 지원 사항 "식사 [ ] "교통[ ] *기숙사[ ] *현물지원 사형  한장교육 담당자 연락처	실싙	늘요일	월 [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 *** *** *** *** *** *** *** *				_
기타사왕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산재보	험 가입		_
정규실습시간 "지급기준 : [월/주 기준 중 선택] * [ 기준] / [ ]원 (*교육부 교시 기준에 따라 작성) 지급예정일 "당월 [ ]일 또는 "익월 [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기타 지원 사항 "식사 [ ] "교통[ ] "기숙사[ ] 4 현물지원 사항  현장교육 당당자 부서명 영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부서명 주소 직무명 교육 * 목표 * 실습 지무 * 개요 * 운영 * / *	IJЕ	가사항		
실습지원비 연장실습시간 *지급기준 : [시간 기준] / [ ]원 (*교육부 교시 기준에 따라 작성) 지급예정일 *당월 [ ]일 또는 *익월 [ ]일 (*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기타 지원 사항 *식사 [ ] *교통[ ] *기숙사[ ] * 현물지원 사항  현장교육 당당자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부서명 주소 직무명 교육 * 목표 * 실습 직무 * 개요 * **			*근도계약 제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_
지급예정일 *당월 [ ]일 또는 *익월 [ ]일 (*의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 기타 지원 사항 *식사 [ ] *교통[ ] *기숙사[ ] *현물지원 사항  현장교육 연락처 이메일  부서명 주소 직무명 교육 * 목표 *  실습 지무 * 개요 * * 운영 * / *				
기타 지원 사항	실습	지원비		
변장교육 담당자 부서명 경명 직위 휴대폰 이메일 부서명 주소 직무명 교육 * 목표 *				
변상교육 담당자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부서명 주소 직무명 교육 * 목표 *		기타 지원	원 사항	<u></u>
HHR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무서명 주소 지무명 교육 * 목표 * 지구 * 개요 * * * * * * * * * * * * * * * * *	취지	r 7 0	부서명 성명 직위	
부서명   주소   직무명   교육 * * * * * * * * * * * * * * * * * *			연락처 휴대폰	
주소 직무명 교육 * 목표 * 직무 * 개요 * * 운영 *	10	당사	이메일	
주소 직무명 교육 * 목표 * 직무 * 개요 * * 운영 *		부서명		_
직무명 교육 * 목표 * 직무 *				
교육 * 목표 * 직무 * 개요 * * 운영 * / *				
실습 직무 개요 * * 운영 * / *		교육	*	
직무 *		목표	*	
* 개요 * * * * * * * * * * * * * * * * * *	실습	<b>T</b> I C		
* 운영 * / *	직무		*	
운영 * / *		개요		
*		운영		_
···		지도		
계획 *		계획	*	_
전공				
(인원)		(인원)		
학년		학년		
학점/  학생   변경	하샌			
				_
<sup>쓰긴</sup>   요구     역량				
				_
기타   사항				

#### [별지 제2호 서식]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본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하 '교육부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수 원과학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교육과정의 운 영근거를 마련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습기관**, 참여하는 **학생**, 운영 주체인 **학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체 결한다.

제1조(교육과정) 20 학년도 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2조(운영사항)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1. 실습기관명 :
-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내용 및 지도 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학교에 기 제출한 교육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 3. 실습기간은 <u>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u>로 한다. 다만, 학생별 실제 실습기간은 실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
- 4. 실습시간 및 요일
- 가. 실습시간 : 1일 \_\_시간 / \_\_ : \_\_ ~ \_\_ : \_\_(휴게시간 : 1시간 포함)
- 나. 실습일수 및 요일 : 주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
- 다. 교육과정 상 사전협의 및 동의 되지 않은 야간(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에 실시될 수 없다.
- 라.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시간 외 연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1주 최대 5시간 한도로 사전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부 고시 따라 본 협약서 외 추가로 근로계약 체결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 5. 휴게 및 휴일
- 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실습기관에서는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1일 이상의 휴일 및 공휴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실습기간 중 학생의 공적 의무 수행일, 경조사일, 입원일 등의 휴일 활용을 보장한다.
- 나. 실습기관에서는 위 휴일 외 실습기관의 사정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 6. 실습지원비 등
- 가. 실습기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준수하여 [<u>월/주</u>] 기준 \_\_\_\_원 (세전)을 [<u>당월/익월</u>] \_일 경에 학생별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학생이 중도 포기하거나, 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 나. 실습기관에서 연장·야간 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장·야간 실습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지원비 외 해당 실습기관의 편의 · 복지 제도의 활용을 지원한다.
- 7. 실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 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 8.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 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 고, 학교에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학생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는 경우 해당 보험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 9. 실습기관에서는 본 협약서 외 학생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 체결하지 않으며*],

#### 5-0-1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u>가입한다 / 가입하지 않는다</u>].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및 지도계획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해지 및 중단 등)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중 부득이하거나, 합당한 협약해지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습기관 또는 학생은 학교와 협의한 후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상호 동의 및 합의하에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실습기관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어 학생의 해당 학기 이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해당 실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실습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의 학기 이수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호협력 등)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호 및 성희롱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습기관 및 학생,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상호 권리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운영한다.

제5조(방문 지도·점검) 학교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기관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Co-op) 운영 사항의 적합성을 방문·서면 등으로 점검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학교의 교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시 적극 협조한다.

제6조(출석·평가) 실습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의 출석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석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을 학교에 제출한다.

제7조(기타) 본 협약은 각 조항에 따른 사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서명 날인 후 상호 협의한 방법으로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학	교]	[실습기관]		[학 생]
수원과학대학교		실습기관명 기입		대학명 기입
	학과장 (인)	대표자또는담당부서장	(인)	0000학과 000(인)
				(학생이 많을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YYYY.MM.DD ~ YYYY.MM.DD

#### ■ 평가표

\*작성방법 : 평가항목별 점수에 ☑ 표기 후 평가 합계 작성

				*~~~	<u>ы</u> .	0/10	, – –	<u> </u>	<u>v</u> 1		071	합계 작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6/167	6/167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01	흡	매우	미흡	합계	
	실무관련 지식		10		8		6		4		2		
수행능력	업무숙지 능력		10		8		6		4		2		
	업무이행 (과정)능력		10		8		6		4		2	/60	
	업무이행 (결과)수준		10		8		6		4		2	/60	
	혁신/창의성		10		8		6		4		2		
	소통/표현 능력		10		8		6		4		2		
	성실성/시간관리 능력		5		4		3		2		1		
ᄉᇸᇚᆫ	책임감		5		4		3		2		1	/20	
수행태도	대인관계/협업 능력		5		4		3		2		1	/20	
	업무절차/기준 준수		5		4		3		2		1		
출결태도	출석/결석/지각(근태)		20		16		12		8		4	/20	
평가 총점											0 /100		

### ■ 평가 의견

[작성기준]	학생에게	비공개되며,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반적인	실습평가 의견	기술	바랍니다.	

### ■ 학생에 대한 피드백

[작성기준] 학생에게 공개되며, 학생의 장/단점, 개선할 사항, 직무관련 수강교과 제안 등 기술 바랍니다.

붙임 서류 출석부

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완료에 따라 귀 대학의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표 및 출석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실습기관 평가자

실습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 날인	(인)

### 수원과학대학교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 [붙임] 출석부

#### ■ 평가 대상 학생 정보

대학명	학과/전공	
성명	학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간	YYYY.MM.DD ~ YYYY.MM.DD

#### ■ 춬석부

	<u> </u>																	
ا ہے۔	T =1	7	<u> </u>	3	화		<u> </u>	=	루	=	글 _	<u> </u>	Ē	ç	길	출석	결석	휴일
연도	주차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수	일수	일수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 작성방법

- 연도 : 해당 주차수에 해당하는 연도 기입
- 주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가 수행되는 주차수 기입(16주차를 초과할 경우 주차수 추가하여 기입)
- 일자 : 월/일 형태로 기입 (예 : 12월 28일의 경우 12/28로 기입)
- 출결 : 출석, 지각, 결석, 휴일 중 기입
- 출석 : 실습수행 일자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경우
- 지각 : 실습수행 일자에 정해진 시간 이후 출석하여 지각으로 처리되는 경우(실습일수에서는 출석일로 처리하나, 출결태도에 점수 반영)
- 결석 : 휴일이 아닌 실습수행 일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무단 결석이 있을 경우 학교와 협의 필요)
- 휴일 : 실습기관의 휴무일(실습기관에서 정한 휴무일로 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실습기관의 휴무일 외 학생에게 부여(허용)한 휴일(교육부 고시에 따른 학생 보장 휴일 및 공휴일, 실습기관 부여 휴일 등 포함)
- 출석/지각/결석/휴일수 : 해당 주수별 일자를 기입하고, 주수별 합산 7일이 되도록 입력

작성예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출석	결석	휴일
연도	주차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자	출결	일수	일수	일수
2020	1주차	12/28	출석	12/29	지각	12/30	출석	12/31	출석	1/1	출석	1/2	휴일	1/3	휴일	5	0	2
2021	2주차	1/4	출석	1/5	출석	1/6	휴일	1/7	출석	1/8	결석	1/9	휴일	1/10	휴일	3	1	3